

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등
2개 부령 일부개정을 위한 부령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약자 등 오프라인 민원서비스 이용자들의 민원서식 작성 시
한결 읽고 쓰기 쉽도록 글자크기와 작성란을 확대한 ‘큰글자 서식’을
마련하여 오프라인 민원서비스의 품질을 제고

2. 주요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0000부 합의 완료(00.00.00)

라. 기 타 : 1) 입법예고(00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등
2개 부령 일부개정을 위한 부령 제정안

제1조(「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인쇄된 서식은 해당
인쇄분의 소진 시까지 개정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 . . >

어업허가 신청서
(근해어업 · 연안어업 · 구획어업)

※ 뒤쪽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시 · 도: 5일 시 · 군 · 구: 3일
------	------	------	----------------------------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소속 단체명		직위	

사용 어선	어선의 종류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승선원 (명)	기관종류	총톤수 (톤)	마력	선질

허가 어업	종류	어업의 종류	조업의 방법과 어구의 명칭	조업구역	어업의 시기	포획물 · 채취 물의 종류
	주 어업					
	그 외의 어업					
	그 외의 어업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주요 기기 및 시설	양륙항 (근해어업의 경우만 해당함)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 제2항 · 제3항제1호(「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에 따른 관할수역 내의 어업허가를 포함한다)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어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뒤쪽에 첨부서류 및 동의서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신청인 제출서류	1. 근해어업·연안어업의 경우 가.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을 말합니다) 나. 「수산업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라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2. 구획어업의 경우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다.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경우로서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을 말합니다) 1부 라. 「수산업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라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는 서류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하여 육상해수 양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만 해당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허가권자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제출합니다)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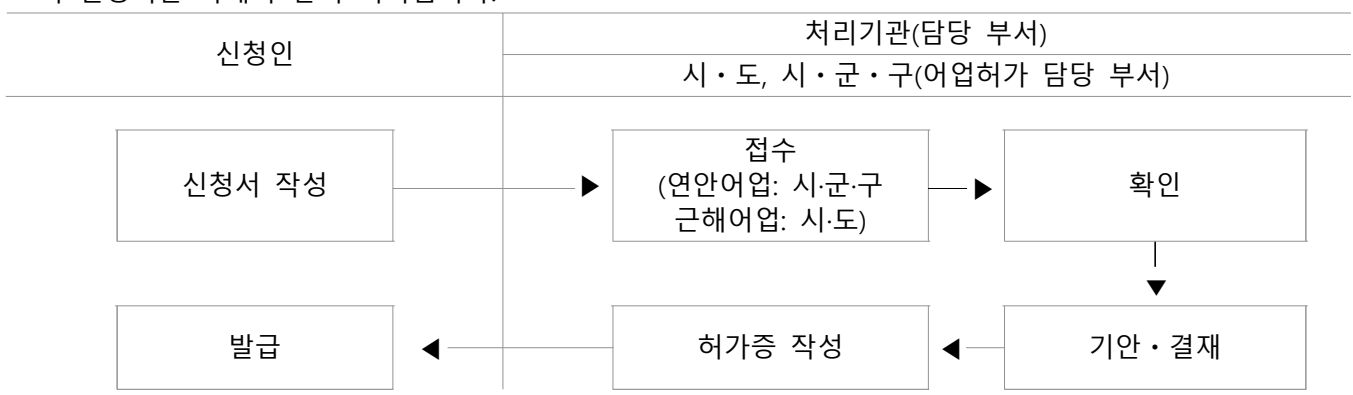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어선의 종류란에는 본선, 등선, 운반선, 어탐선 및 가공선 등 허가를 받으려는 모든 어선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같은 어선에 두 종류 이상의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 어업과 그 외의 어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허가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접수기관이 해당 허가 사항을 적은 어업허가증을 작성하고 다른 기관에 이를 송부하여 허가 사항을 추가로 작성하도록 한 후 최초 접수기관에서 어업허가증을 발급합니다.
- 처리기간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기간, 시·도 또는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기간 및 제2호 후단에 따른 경유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 . . >

한시어업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시·도: 5일 시·군·구: 3일
------	------	------	----------------------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소속 단체명	직위

사용어선	어선의 종류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총톤수(톤)	마력

기존의 허가받은 어업의 내용	종류	어업의 종류	허가번호	허가기간
	주 어업			
	그 외의 어업			
	그 외의 어업			

한시어업	어업의 종류	수산동물의 종류	해역의 범위	조업기간

「수산업법」 제42조(「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에 따른 관할수역 내의 어업허가를 포함합니다)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한시어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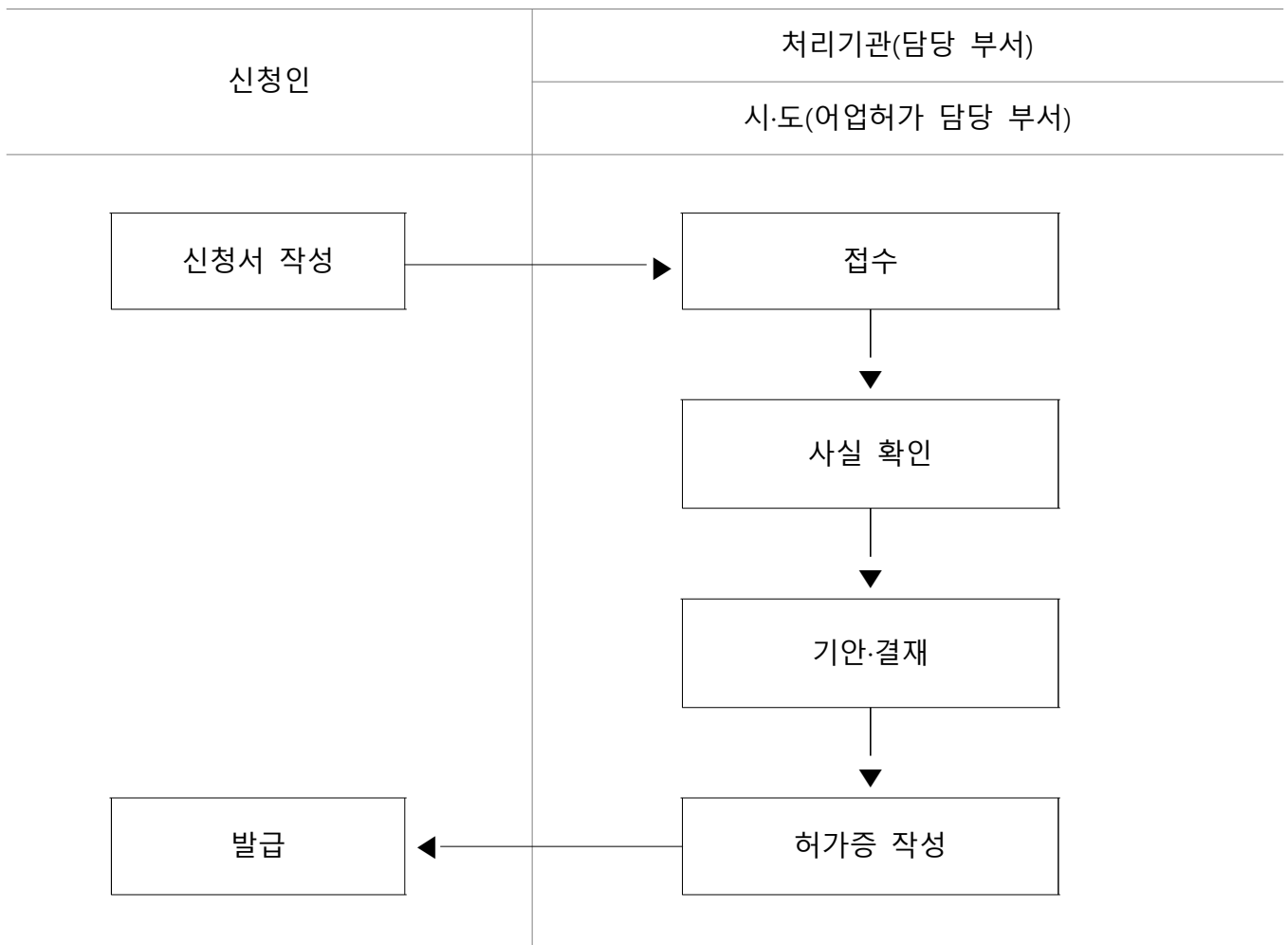
시·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사본 1부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

(정치망어업용)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9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어업의 종류 및 규모	어업 규모 m ²			
수면의 위치 및 구역	도 군 면 리 지선 (별지 도면과 같음)			
어업의 방법 및 사용 어선				
포획·채취물의 종류				
면허를 받으려는 기간	. . 부터 . . 까지 (년간)			
지분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성명			
	주소			

「내수면어업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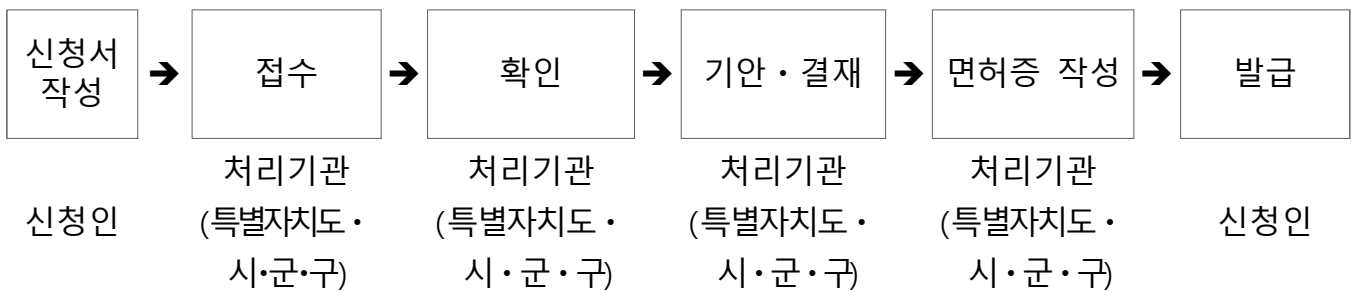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

(지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용)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어업의 종류						
어업의 방법과 어구의 명칭						
어구의 규모	(m, 폭, 통, 기타)					
조업구역	일원					
사용어선	선명	톤수	기관	마력	선질	진수 연월일
포획·채취물의 종류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부터		까지		(년간)	

「내수면어업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수면의 위치도 1부(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양식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양식을 목적으로 종묘 채포어업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1부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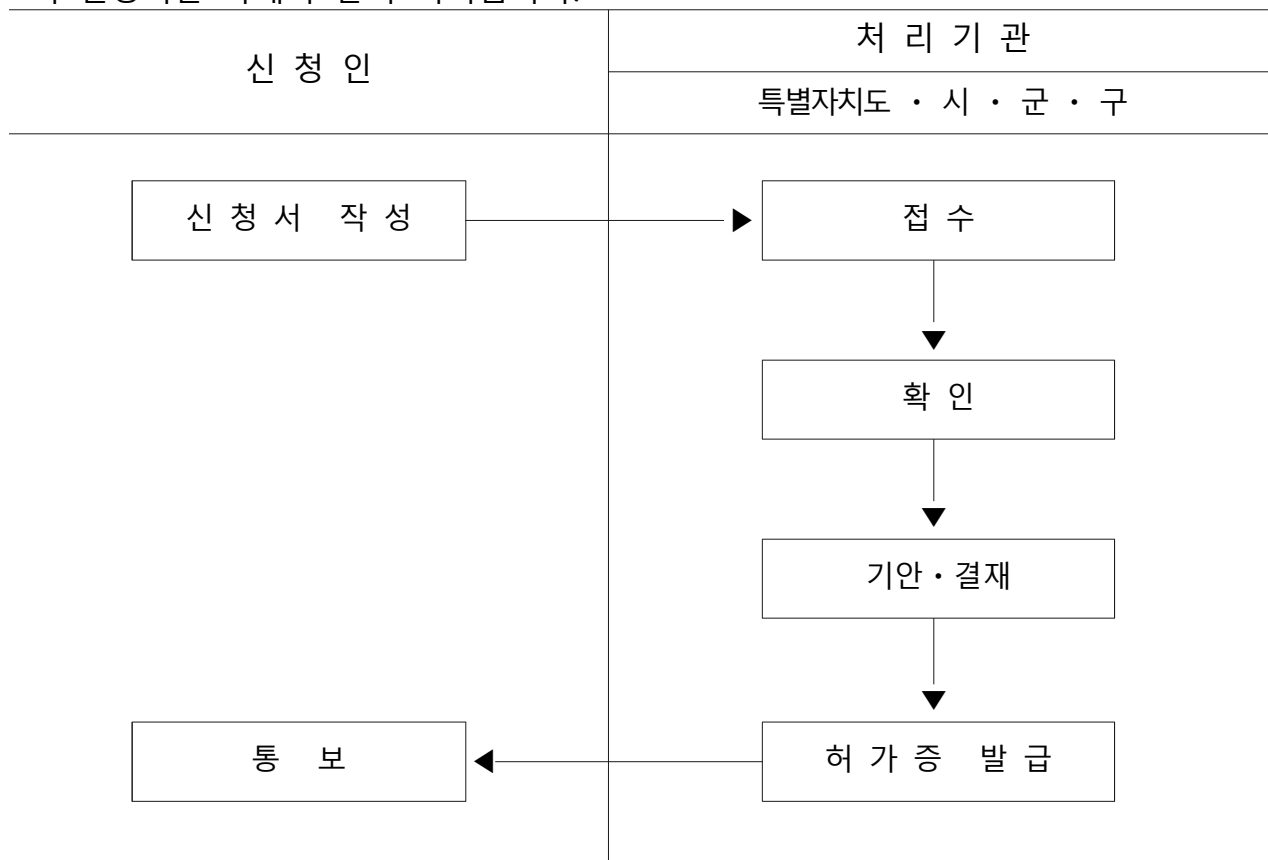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규제법무담당관실	
연 락 처	(044) 200-5164